

제 284회 시의회 정례회
행정자치위원회

2018. 11. 21 .

I · SEÓUL · U
너와 나의 서울

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

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2018. 11. .

재 무 국
(자산관리과)

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예비비 사용 현황 보고

정비구역내 시유지 매각시, 매각대금 자치구 귀속비율 적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(1심)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선 지급

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243
- 당 사 자 : 원고(성동구), 피고(서울시)
- 소송가액 : 3,596,703,986원 ※ 판결금액 : 455,649,369원
- 사건개요
 -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 시,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인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른 공익사업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매각대금의 10%를 자치구에 귀속하고 있으나,
 - 성동구청장은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매각 시, 귀속비율을 일반 매각에 준하는 20~30%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된 부당이득금(3,596,703천원)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

예비비 사용 주요 내용

- 지급시기 : '18.4.10.
- 지급사유
 - 본 소송은 서울시가 일부 패소(13%패소, 87%승소)한 소송으로, 정비구역내

시유지 매각시 사업시행자 및 점유자·사용자를 구분하여 귀속비율을 달리 정하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항소제기 중에 있으며,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판결금과 이자액을 선 집행하고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

○ **사용액 : 480,015,086원**

(원금 : 455,649,369원+ 5%이자 :18,748,122원+15% 이자 : 5,617,595원)

소송진행 경위

- 2017.4.7. : 소송 제기
- 2017.7.12. ~ 12.13. : 변론진행(5회)
- 2018.2.21. : 1심 판결
- 2018.3.12. : 항소장 제출(피고 패소 부분)

판결개요

○ **판결주문**

- 피고는 원고에게 455,649,369원 및 그중 445,450,358원에 대해서는 2017.4.24.부터, 7,690,714원에 대해서는 2017.9.11.부터, 2,508,297원에 대해서는 2017.12.11.부터 각 2018.2.21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 중 8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○ **판결요지**

- 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(재개발조합)에 매각한 경우

② 점유·사용하던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결

⇒ ▶ (사업시행자에게 매각)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시유지 매각대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매각대금의 10%를 자치구에 귀속 (서울시 인정)

▶ (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)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점유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매각귀속비율을 적용해야 하며, 일반매각 귀속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보상금 귀속비율로 계산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(성동구 인정)

③ 서울시의 자동채권(1,051,688,260원) 상계 인정

⇒ ▶ ‘옥수제13구역조합’내 시유지 유상매각에 대해 재개발조합에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(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 106909호)에서 무상양도가 타당하다고 판결됨에 따라 위 시유지 매각대금 귀속비율로 지급한 귀속금을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반환해야 하므로 위 금액 상계인정

▶ 판결금액(455,649,369원) : 부당이득반환금(1,507,337,629원) - 자동채권 상계액(1,051,688,260원)